



2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안내



m.kead.or.kr



blog.naver.com/kea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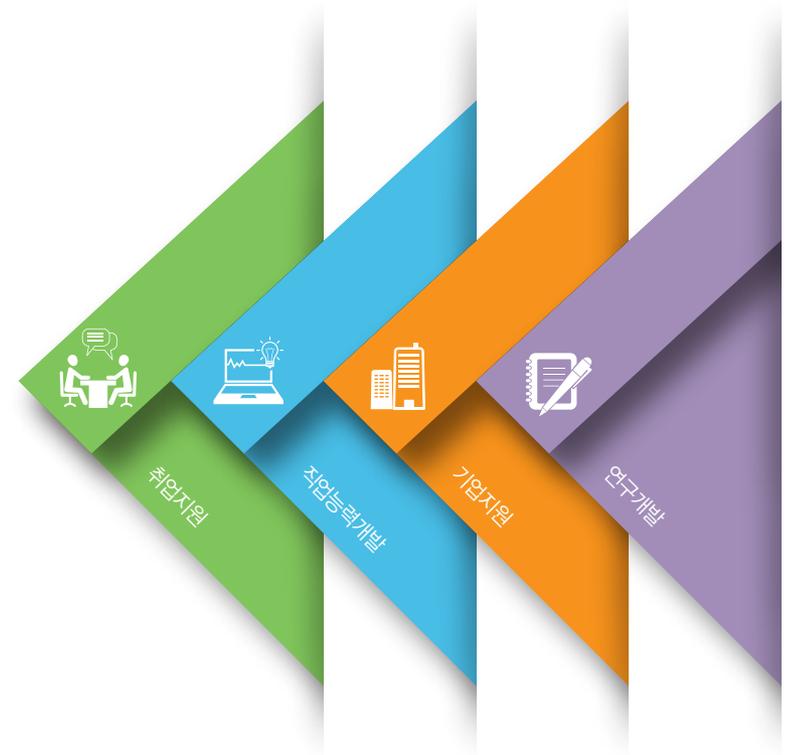


twitter.com/hahakead



facebook.com/hahakead

대표전화 **1588-1519**



공단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객이 신뢰하는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을 지향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공단의 주요 사업을 만나보시죠.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지사나 직업능력개발원을
 찾아주세요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1519**
 홈페이지 www.kead.or.kr

01 취업지원

취업을 향한 길을 안내합니다



02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로
 취업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



03 기업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04 연구개발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수도권

공단본부	031)728-7001~3
고용개발원	031)728-7000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00
서울맞춤훈련센터	02)2262-0900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02)2262-0963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2)242-1091
청각장애인훈련센터	031)910-0942
서울지사	02)6320-7000
서울남부지사	02)6004-1004
인천지사	032)242-1004
경기지사	031)300-0900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충청·강원권

대전직업능력개발원	042)366-5412
대전지사	042)620-6200
충북지사	043)230-6400
충남지사	041)629-6000
강원지사	033)737-6618

호남·제주권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00
광주지사	062)448-1155
전북지사	063)240-2400
전남지사	061)240-0700
제주지사	064)710-5000

영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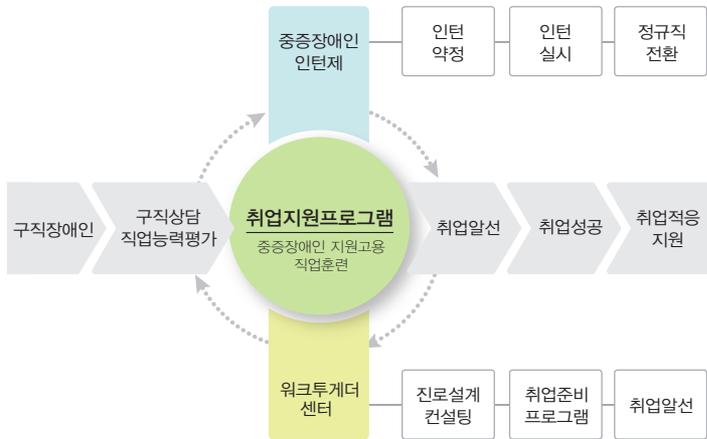
부산직업능력개발원	051)726-0321
대구직업능력개발원	053)550-6000
부산지사	051)640-9800
대구지사	053)288-1500
울산지사	052)226-1004
경북지사	054)450-3000
경남지사	055)225-8000

취업지원



1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구직상담** 기본정보, 직업경력, 희망사항 등에 대한 상담
- **직업능력평가** 구직장애인의 직업적성과 잠재능력 평가
- **취업지원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프로그램
 - **직업훈련** : 구직장애인의 기능 습득 및 향상
 - **중증장애인 인턴제** :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 연계형 인턴 프로그램
 - **워크투게더센터** : 고등부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알선**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 탐색 및 알선
- **취업적응지원** 취업 이후 안정된 직장생활 적응 지원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
www.worktogether.or.kr

2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알맞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대상**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고용조건)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기기지원 한정)
- **내용**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제작·개조하여 지원
- **지원한도**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이내
 - **무상지원**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이내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지원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1,500만원 한도로 지원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
(예) :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협의를, 자료해석, 업무상 결정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장애로 인해 정보검색, 수기 문서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시각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어려움 해결
- **내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 (공단의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시간 당 300원



2 직업능력개발



1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및 숙식 전액 국비 지원
- 훈련준비금 및 기계보조수당, 가족수당, 훈련참여수당 등 훈련수당(해당자) 지원

일산직업 능력개발원	훈련전공	지능형기계,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인쇄출판미디어, 귀금속공예, IT융합
	특성화훈련	시각(정보접근성), 청각(CAD/CAM, 네일아트), 지적(실무작업)
부산직업 능력개발원	훈련전공	해양디자인, CAD/CAM, 전자, 스마트정보, 외식응용제과제빵, 푸드엔지니어링, 디지털건축설계, 메카트로닉스
	특성화훈련	정신(기업실무), 지적(실무작업)
대구직업 능력개발원	훈련전공	스마트경영(경영회계, 서비스마케팅), CAD/CAM,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패션디자인
	특성화훈련	청각(전자), 지적(실무작업)
대전직업 능력개발원	훈련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 CAD/CAM, 스마트정보, 디자인, 외식응용제과제빵
	특성화훈련	청각(반도체디스플레이), 지적(실무작업)
전남직업 능력개발원	훈련전공	금형디자인, 전자, 스마트정보, 디자인
	특성화훈련	뇌병변(디자인), 지적(실무작업)

정규훈련	맞춤훈련	향상훈련	특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훈련 •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 1개월~2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연계 맞춤훈련 • 1개월~1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준비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체형 프로그램 • 단기직무 프로그램 • 정부·공공부문 사이버훈련

2 훈련센터 운영

기업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훈련센터와 청각 및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및 식비 전액 국비 지원
- 훈련준비금 및 기계보조수당, 가족수당, 훈련참여수당 등 훈련수당(해당자) 지원
- 맞춤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에서 훈련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업체 연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맞춤훈련센터	사업체가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1개월~6개월 운영
----------	----------------------------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과정훈련을 1개월에서 12개월 운영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서울시교육청 연계 /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인천시교육청 연계 / 남동구 청선학교 내
-------------	------------------------

● 청각장애인훈련센터

청각장애인훈련센터	청각장애인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전문반 운영
-----------	------------------------------------

3 직업능력개발 지원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외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34개 공공직업훈련기관, 공단 지원 28개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훈련 지원
훈련생에게 훈련준비금, 기계보조수당, 교통비, 식비, 훈련참여수당 등 지원
- 장애인의 개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지원과정 : 국가자격·면허 취득과정, 공무원·부동산과정 등
• 훈련수강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운영(digital.kead.or.kr)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청각장애인이 활용가능한 공무원시험준비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 제공
- 사이버훈련지원
외부업체연계를 통한 공무원시험준비, 공기업취업준비, 교원임용시험준비 등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

4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기능 장인을 꿈꾸는 장애인의 실력 경연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16년 6월 중 / 전국 17개 시·도
-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
2016년 5~6월 중 /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16년 9월 중 / 경상남도 창원시
-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2016년 3월 23일(수)~3월 27일(일) / 프랑스 아키텐주 보르도 스타디움
- 입상자 혜택
상금지급, 기능사시험면제(지방대회-실기/전국대회-필기&실기), 사후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campus.kead.or.kr

3 기업지원 I



1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지원

기업의 장애인 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기업

○ 내용

- 기업의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진단
- 장애인 고용 가능직무 개발 및 적합인력 지원
- 공단의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지원 및 다양한 정부지원혜택 연계

○ 과정



2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용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
- 용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5,000만원),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사업주는 공단과 은행이 약정에 따라 정한 대출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 부담
- 용도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
- 내용 : 사업주당 3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장애인 1인당 1,500만원)
- 용도 :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 통근용 승합차 구입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는 기업
 -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 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기업
- 용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용자금 1억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고용조건
- 대출금리 : 사업주는 공단과 은행이 약정에 따라 정한 대출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 부담
- 용도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구입·설치·개선·교체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대상 : 중증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한 기업
-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4만원(수급자격 인정 후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간 지원)
- 용도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작업지도원 선임·배치

3 더 편한일터 만들기 지원

기업이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로 거듭나도록 도와드립니다.

○ 대상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

○ 내용

- 맞춤형 편의시설 컨설팅 서비스 지원
-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 지원 및 편의시설 관련정보 제공

○ 신청

연중 수시



3 기업지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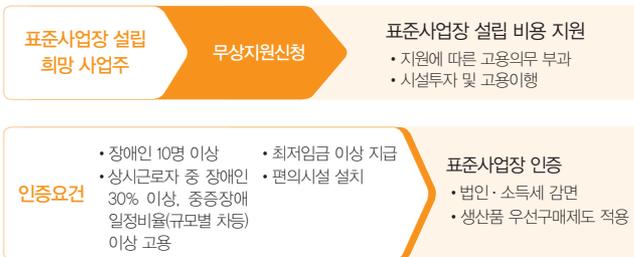
1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중 매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대상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기업

※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표준사업장으로 지정 가능



○ 내용

- 최대 10억원(용도에 해당하는 총 투자계획금액과 공단 산정금액 중 적은 금액의 75%) 지원
-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상품 우선구매제 적용
-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상품 우선구매 촉진 근거 신설

○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 제외), 장애인 통근용 승합차 구입(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20명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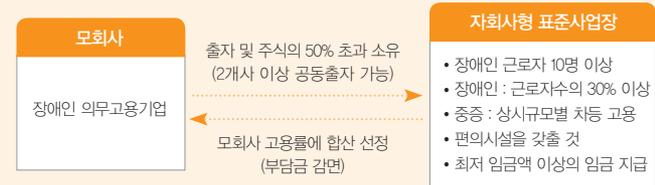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 ※ 같은 법 제22조의 ④항에 의거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인원을 모회사의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최대 10억원(용도에 해당하는 총 투자계획금액과 공단산정금액 중 적은 금액의 75%) 지원
- 자회사의 의무고용 초과인원에 대해 월 15~6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 ※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상품 우선구매제 적용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지원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대상

개별시설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장애인 고용사업장)

○ 내용

BF 인증제도 상담 및 기술지원, 예비·본인증 심사 및 심의 후 인증서 발급

○ 신청자

건축물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시기

연중 수시

3 기업지원 Ⅲ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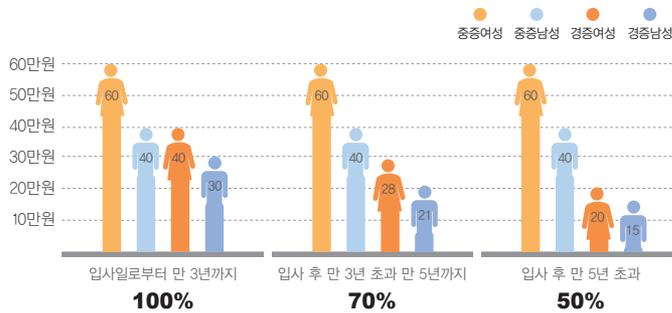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기업 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 내용

- 지급단가



※ 중증여성 지급단가는 '16년 발생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급·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신청

- 1월 1일 ~ 3월 31일분 :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년
- 4월 1일 ~ 6월 30일분 :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3년
- 7월 1일 ~ 9월 30일분 :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3년
- 10월 1일 ~ 12월 31일분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

2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장애인고용률이 월별 상시근로자의 2.7%에 미달(소수점 이하 버림)한 민간기업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무고용률 2.7%적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포함)(의무고용률 3% 적용)

○ 내용

기준(적용)연도	2016년	
신고·납부연도	2017년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2.7%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닌 근로자)	2.7%
	공공기관	3.0%

○ 신고·납부

- 부담금은 매월 미고용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60% 이상 수준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구 분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 3/4이상 고용한 경우	757,000원
의무고용인원 1/2이상 3/4에 미달한 경우	832,700원
의무고용인원 1/4이상 1/2에 미달한 경우	908,400원
의무고용인원 1/4에 미달한 경우	984,100원
장애인 고용이 없는 경우	1,260,270원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업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납부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수의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1 연구개발 수행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및 서비스 연구를 수행합니다.



○ 정책연구 :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뒷받침 및 대안제시

- 중장기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지원
- 공단사업 평가
- 국내외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연구

○ 고용개발 :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실천방법 개발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영역 개발
- 다양한 현장밀착형 고용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기업 및 장애인의 욕구파악 및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

○ 조사통계 : 정책수립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생성 및 보급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 통계집 발간
- 국내외 장애인통계 수집 및 분석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edi.kead.or.kr

2 교육연수 운영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수행합니다.

○ 교육과정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참가자 : 기업 임직원, 인사담당자 등
- 교육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식개선방법 습득

•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교육

- 교육참가자 :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체 및 장애인 취업지원기관 실무자 등
- 교육과정
 - ①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 ②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교육
 - ③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 ④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종사자교육
 - ⑤ 공단에서 개발한 직업능력평가도구 활용교육 등

○ 교육형태

• 온라인교육 :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cyedu.kead.or.kr)

• 집합 교육 : 고용개발원 입소 교육, 기업 현장교육 등 운영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cyedu.kead.or.kr